

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유전열
전화 051-606-4164

보도자료
2021. 4. 29.(목)

제 목 **국제 해킹 범죄조직의 편취자금 회수를 위해 조직원을 무고한 사범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부산지방검찰청(외사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신동원)은 '20. 3. 포르투갈 검찰청 으로부터 형사사범공조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 ① 국내 기업과 무역거래 중인 포르투갈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무역 대금(미화 6만 3천불)을 편취하고(A), ② 이후 수익분배 과정에서 국내 자금 인출책이 위 무역대금을 전부 횡령하자(B), ③ 이를 되찾고자 경찰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자금인출책을 무고(A·C)하였음을 규명하여,
 - B, C를 구속기소하고, 해외 거주 중인 A를 추적검거하고자 미국에 형사사범공조를 요청하였음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에 비대면 무역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무역거래질서 및 사범신뢰 저해 사범을 엄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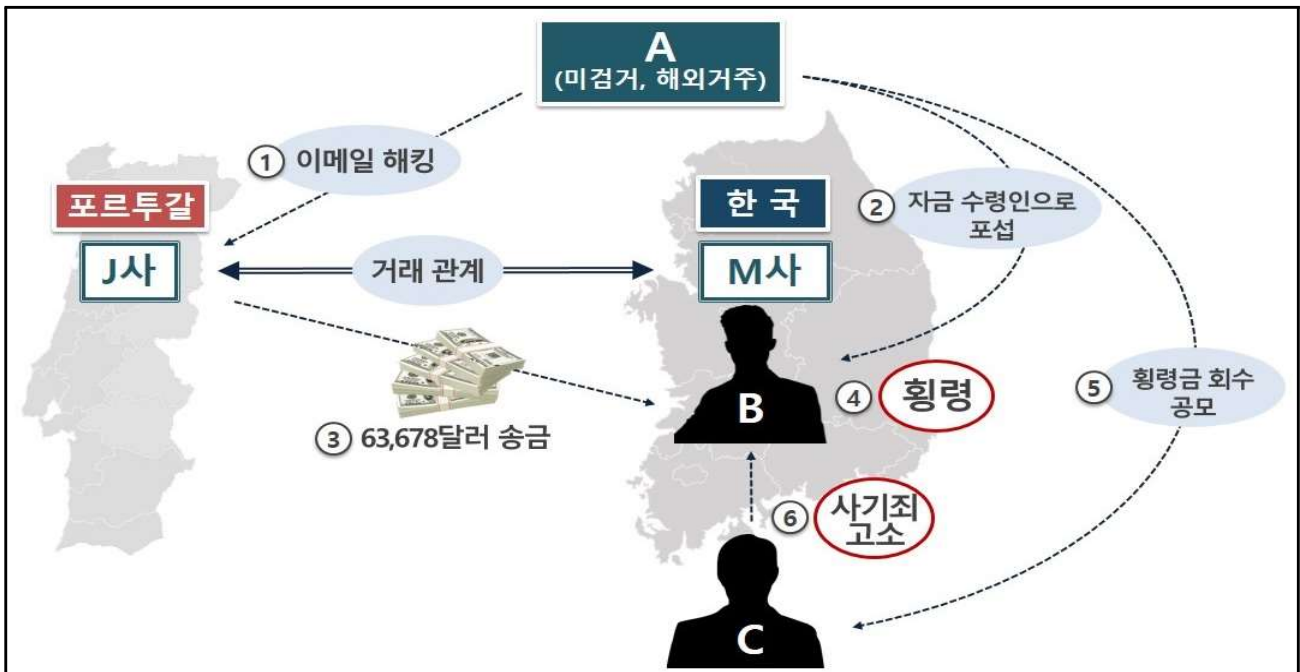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B(62세, 사업, '20. 12. 구속기소)
 - C(39세, 무직, '21. 4. 구속기소)
 - ※ A(미검거, 해외거주)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B) '19. 4. 이메일 해킹 범죄조직원인 공범 A가 이메일 해킹을 통해 포르투갈 소재 J社の 국내 M社에 대한 물품대금 미화 6만 3천불을 편취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인출 과정에서 무역 관련 계약서 등 위조·행사 [횡령, 사문서위조·행사]
- (피고인 C) '19. 8. A와 함께 위 금원을 회수하고자 B를 상대로 「B가 해바라기유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6만 3천불을 편취했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소재 V社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행사 [무고, 사문서위조·행사]

[범행 개요도]



범행 개요 보충 설명

- ▶ (위 ①~③) 해외에 있는 이메일 해킹 범죄조직원인 A는 '19. 4.경 피해자인 포르투갈 소재 J社の 기업 이메일을 해킹한 다음, 마치 한국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무역 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거짓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편취
- ▶ (위 ④) 국내 자금인출책 B는 '19. 4.경 입금받은 금원을 분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전부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출금 과정에서 기업 간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
- ▶ (위 ⑤~⑥) 이에 A는 위 자금을 회수하고자, '19. 8.경 국내 고소대리인 C를 내세워 B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

- 즉, C는 위와 같은 대금 편취 및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회수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서, B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자 다수의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고
- ※ 특히, C는 B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A로부터 고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공이 늦어지자, 미국 거주 지인에게 A의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도록 한 후,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임

2 수사 경과

- '19. 4. A는 무역대금 편취, B는 위 자금을 횡령
- '19. 8. A·C는 B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고소
- '20. 1. B에 대한 사기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 3. (포르투갈로부터) 형사사범공조요청 접수, 수사 착수
- '20. 12. B 구속 기소
- '21. 4. 28. C 구속 기소

3 참고 사항

- 본건은 포르투갈의 형사사범공조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국제 해킹 범죄조직이 이메일 해킹 수법으로 포르투갈 회사의 무역대금을 편취한 것을 규명하고, 이후 공범들 간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편취자금을 횡령한 B와 이를 회수하고자 경찰에 B를 사기죄로 무고한 C를 모두 구속기소한 사안임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무역거래 사건에서,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인 C가 고소대리를 한 점에 착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사건이 사실은 공범 간 수익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였음을 규명함
- 직접 이메일 해킹을 실행하고 전체 범행을 조율한 A의 추적·검거를 위해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수사국(HSI)에 형사사범공조를 요청했으며, A의 신병확보 등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